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7누70177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합90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3.
판 결 선 고	2018.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490,0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00,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4쪽 10행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로 고치고, 같은 쪽 아래에서 6행부터 6쪽 11행까지의 2)항 부분 전체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4에서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일단 원고가 1989년경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주주명부 등에 D을 거쳐 E 앞으로 순차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2014. 4.경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무렵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을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주주에 대하여만 아니라 회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할 무렵인 1989년경부터 자신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등을 마친 2014. 4.경까지 B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가 계속 D이나 E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원고 명의로는 명의개서가 마쳐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이 당시 원고가 D이나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당시 이미 의결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과세대상'의 '귀속'에 관해서는 실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으로서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또한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문제의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참조) 문제의 주식 양수인이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그 주식의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 명의를 빌린 사람이 사후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하였는지 등의 후발적 사정에 따라 소급하여 문제의 주식 거래 당시에 그러한 지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좌우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1] 위와 같은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이유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간주취득세 등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도 그러한 지위와 관련하여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의 주주가 되는 시기(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사법(私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두24842 판결 참조), 주주의 자격으로 실제 의결권 등을 행사한 시점을 그 시기로 볼 수는 없다.

2) 이러한 견해에 일부 배치되는 듯한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7619 판결, 대법원 2016. 3. 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2-28

의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4. 4.경이 아니라 1989년경 이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과 대상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기열

판사 박재우

판사 정승규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전의 것들인 데다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주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